◎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 규정

제정 2008. 2. 11.
개정 2016. 1. 12.
개정 2018. 3. 22.
개정 2020. 1. 15.
개정 2020. 12. 29.
개정 2021. 7. 23.
개정 2022. 8. 17.
개정 2024. 12. 18.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및 개최근거 · 목적) 본 대회는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이하 "본 대회"라 한다)라 칭하며,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규약 제4조제5호에 의거 도내 장애인의 체력향상, 우수 · 신인선수 발굴, 장애인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장애인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도내에서 개최한다. 〈개정 2022. 8. 17.〉

제 2 조(주최, 주관) 본 대회는 경상북도와 본회가 공동 주최(이하 "주최측"이라 칭함)하고, 개최지와 시 · 군지회가 주관하며, 본회는 본 대회 추진업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이사회의 자문을 받는다. 〈개정 2022. 8. 17.〉

제 2 조의2(대회횟수) 본 대회는 1999년 구미에서 개최한 제1회 대회부터 횟수를 기산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도 횟수로 통산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 2 조의3(대회 상징마크 및 대회 구호) 대회의 상징마크 및 대회 구호는 본회가 정하여 사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 2 조의4(대회표어) 대회의 표어 및 마스코트는 개최지에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회 기간 중 주경기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 게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본조신설 2020. 12. 29.〕

제 2 장 대회개최

제 3 조(개최시기 및 결정) ① 본 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4~5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연도는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② 개최시기의 결정 및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한다. 〈개정 2022. 8. 17.〉
③ 대회기간은 2일간으로 한다. 〈신설 2021. 7. 23.〉

제 4 조(개최지 선정) 본 대회의 개최지는 경북도민체육대회 당해연도 개최지로 한다. 〈개정 2021. 7. 23.〉

제 5 조(경기부문) ① 본 대회의 개최 종목 및 참가유형은 본회 생활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보급발전을 필요로 하는 경기는 이를 시범경기로 참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22. 8. 17.〉

② 〈신설 2018. 3. 22, 삭제 2022. 8. 17.〉

제 5 조의2(경기종목) 본 대회의 경기종목은 정식종목과 시범종목으로 나눈다.

① (정식종목) 시·군 간의 경쟁을 목적으로 하는 종목 중 본회 생활체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종목을 말한다.

② (시범종목) 본회가 특별히 보급, 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종목으로 생활체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범종목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 5 조의3(경기종목 채택 및 취소) ① (종목채택) 경기종목(정식·시범), 세부종목의 채택 및 취소는 본회 생활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참가선수 : 최소 3개 시·군 이상의 선수를 구성하여야 한다.
2. 가맹단체 : 시·군지부를 최소 6개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종목의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3. 경기요원 : 경기진행을 위한 경기요원(심판, 운영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등급분류 및 조정 : 종목별 특성에 맞는 등급분류를 확립하여야 하며, 세부종목별 참가인원이 미달되어 경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협의하여 종목별 특성에 맞게 통합·조정할 수 있다.
5. 경기규칙 : 종목 특성에 맞는 경기 규칙, 경기 운영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세부종목추가) 대회에 세부종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종목취소) 본 대회 종목으로 이미 선정되었더라도 제1항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본조신설 2020. 12. 29.〕

제 6 조(경기행사 제한) 대회 개최일 10일전부터 동대회 종료일까지는 각 가맹단체 및 시·군지부는 개별적인 경기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주최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8. 17.〉

제 7 조(개최요강) 본 대회의 개최요강은 생활체육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제6호에 의거 본회 생활체육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22. 8. 17.〉

제 8 조(대회참가) 본 대회는 각 시·군에서 신청한 개인 및 단체 팀만 참가 가능하며, 대회개최요강 및 가맹단체별 경기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8. 3. 22, 2022. 8. 17.〉

제 3 장 참가신청

제 9 조(예선대회) 각 시·군지회는 본 대회 참가 대표선수를 선발하기 위하여 예선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2022. 8. 17.〉

제10조(참가신청) 각 시·군별 예선대회에서 대표로 선발된 개인 및 단체팀은 대회개최요강에 의거, 지정한 날짜까지 해당 시·군에서는 본에 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2022. 8. 17.〉

제11조(경기운영) 본 대회의 모든 경기는 참가요강에 의하여 각 종목별 가맹단체가 운영한다. 〈개정 2022. 8. 17.〉

제12조(경기방법) 경기종목 중 비기록 경기는 토너먼트방식 경기로 거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일정 및 대진추첨) ① 종목별 경기일정은 각 종목별 가맹단체와 협의하여 본회가 결정한다. 〈개정 2018. 3. 22, 2021. 7. 23, 2022. 8. 17.〉

② 경기대진은 각 시군의 대표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회가 결정한다. 〈개정 2021. 7. 23, 2022. 8. 17.〉

제14조(경기심판) ① 경기진행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경기를 담당한 주심이 이를 처리한다.

② 주심의 판결에 대한 장소(狀訴)는 당해 경기부문의 심판부장이 이를 처리한다.

③ 당해 경기부문 심판부장의 판결에 대한 장소(狀訴)가 있거나 기타 판결되지 않은 심판에 관한 사항은 대회본부 심판부장 및 소청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15조(부정선수) 참가선수가 부정선수로 판명되었을 경우 즉시 탈락시키며 심판 및 소청위원회는 즉시 단체상 시상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제 4 장 채점 및 시상

제16조(심사위원회) 단체상 시상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은 본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 8. 17.〉

제17조(구성) 심사위원은 주최기관, 종목별 가맹단체 임원 중 5명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8. 17.〉

제18조(순위결정) 본 대회의 시 · 군별 순위는 본회의 채점 내규에 의거 채점하여 시 · 군별(시부, 군부) 종합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4. 12. 18.〉

제19조(채점) 본 대회의 채점은 8위까지 경기 부문별 획득한 점수를 종합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대회 채점내규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 12. 18.〉

① 〈개정 2016. 1. 12, 2020. 1. 15, 2022. 8. 17, 삭제 2024. 12. 18.〉

② 〈삭제 2024. 12. 18.〉

제20조(시상구분) 본 대회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시상한다.〈개정 2022. 8. 17, 2024. 12. 18.〉

1. 시·군별 종합성적 및 경기종목별 시상 〈개정 2022. 8. 17, 2024. 12. 18.〉
2. 단체상 시상
   - 진흥상, 화합상, 공로상 〈개정 2016. 1. 12, 2018. 3. 22, 2022. 8. 17, 2024. 12. 18.〉

제21조(시상방법) 본 대회의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종목별 시상 : 개인 및 단체 1, 2, 3위에 메달 수여 〈개정 2022. 8. 17.〉
2. 종합성적 1위, 2위, 3위 시·군에는 상배 및 우승기, 준우승기, 3위기를 수여 〈개정 2016. 1. 12, 2018. 3. 22, 2022. 8. 17, 2024. 12. 18.〉
3. 진흥상, 화합상, 공로상은 상배를 수여 〈신설 2024. 12. 18.〉

제 5 장 대회 임원 및 부서

제22조(임원) 본 대회의 임원은 본회 생활체육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 8. 17.〉

제23조(운영부서) 본 대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에 필요한 임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① 총무부 ② 경기부 ③ 기록부 ④ 심판부
⑤ 시설부 ⑥ 대외홍보부 ⑦ 성화부 ⑧ 의전부

제 6 장 소청 및 처리

제24조(소청심의위원회) 본 대회에 참가한 임원, 선수 및 응원단에 부정 또는 불미한 사실이 있거나 또는 소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소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한다.

제25조(구성) 소청심의위원회는 본회 부회장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 중 2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

제26조(징계) 소청심의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부정선수 여부 판정
2. 시·군 채점시 감점여부 결정
3. 기타

제27조(출장금지) 개인선수 및 단체는 본 대회에 참가신청을 한 후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경기에 출장하였다가 중도에 기권할 수 없다. 불참 및 기권한 개인선수 및 단체는 차기 본 대회에 출장을 금지할 수 있다.

제 7 장 개·폐회식

제28조(참가) 본 대회 개·폐회식에는 대회임원, 선수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제29조(일정) 개회식은 대회 첫날 오전, 폐회식은 최종 경기종료 후 거행한다.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대회기) ① 본 대회 기간 중에는 대회기를 경기장에 게양하여야 한다.

② 대회기 이양은 폐회식에서 개최지 장애인체육회장이 본회 회장에게 반납하고 본회 회장은 차기 개최지 장애인체육회장에게 전달하여 보관하게 한다.

〈신설 2020. 12. 29, 개정 2022. 8. 17.〉

제31조(선수·심판 대표선서) 선수 및 심판대표는 참가선수와 심판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대회장에 대하여 선서하여야 한다.

〈선 수〉

선 서

제 00 회 경상북도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대회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 합니다.

선수대표 : ○○○

○○○

〈심 판〉

선 서

본인은 모든 심판을 대표하여 체육인의 정신으로 경기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심판대표 : ○○○

제32조(행사요원의 선정) ① 공식행사요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대회개최 20일 전까지 본회가 선정 한다.

1. 총지휘자 : 1인
2. 참가선수대표 : 2인(남, 여)
3. 심판대표 : 1인
4. 성화최종주자 : 1인

② 성화최종주자는 선수 또는 선수출신인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①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최지의 시·군지부가 개설되지 못한 때는 본회가 주관한다.

부 칙(2016. 1. 1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 3. 22.)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1. 15.)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12. 29.)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7. 23.)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2. 8. 17.)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4. 12. 18.)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개정 2018. 3. 22, 삭제 2022. 8. 17.〉

〔별표 2〕〈개정 2018. 3. 22, 삭제 2022. 8. 17.〉

〔별표 3〕〈신설 2018. 3. 22, 삭제 2022. 8. 17.〉